

국토교통부공고 제2024-891호

「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」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,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6월 17일

국토교통부장관

**「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」
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**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항공보안 시행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한 항공보안협회의회의 회의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, 위원 이외에 협의회회의 참석자 범위를 확대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2. 의견제출

「항공보안협의회 운영규정」 일부개정예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(참조 : 항공보안정책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 :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

○ 주소 : (30103)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-2동

○ 팩스 : 044-201-4233

○ 전자우편 : casa@korea.kr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(<http://www.molit.go.kr>)<정책자료> <법령정보> <입법예고·행정예고>를 참조하시거나,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(044-201-4233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